

## 캔자스주 교육부 특수교육에서 부모의 권리 (절차적 보호)

귀하와 학교 모두 아동의 교육을 공유합니다. 귀하 또는 학교에 아동의 교육에 관한 문제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귀하와 아동의 교사는 공개적으로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논의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교육구의 특수교육 책임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아동 교육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문서에서는 '장애 아동'과 '예외 아동'이라는 용어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애 아동'은 장애로 인해 일반 교육 과정에 접근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교육이 필요한 13가지 특정 장애 중 하나 이상을 가진 아동을 의미합니다. '장애 아동'이라는 용어는 장애인교육법(IDEA)과 특수 아동을 위한 캔자스 특수교육법(주법) 모두에서 사용됩니다. IDEA는 장애 아동의 교육을 관장하고 해당 아동과 그 부모에게 절차적 보호 조치를 제공하는 연방법입니다. 특수 아동을 위한 캔자스 특수교육법은 IDEA의 모든 요건과 보호 장치를 이행하고 IDEA를 넘어 추가 보호 조치를 제공하는 주법입니다. 따라서 장애 아동과 장애 아동의 부모는 IDEA(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절차적 보호 조치를 받습니다.

'예외 아동' 또는 '예외적 아동'은 주법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이며 장애 아동(상기 정의되어 있음) 또는 영재로 식별된 아동(비슷한 연령, 경험 및 환경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지적 능력으로 인해 하나 이상의 학문 분야에서 훨씬 더 높은 성취도로 수행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재로 식별된 아동과 영재 아동의 부모에게는 주법 하에서만 절차적 보호 조치가 주어집니다. 연방 IDEA는 장애 아동에게만 적용됩니다. 영재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모의 권리 문서에서 '장애 아동'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 해당 조항은 장애 아동에게만 적용되며 영재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문서에서 '예외 아동'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 해당 조항은 장애 아동과 영재 아동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예외적이거나 예외적일 수 있는 (장애 또는 영재로 식별되는) 아동의 부모인 귀하에게는 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영재 아동의 부모에 대해서는 주법에 한함) 특정 권리 또는 절차적 보호 조치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권리는 이 **절차적 보호 조치 통지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권리 목록은 귀하의 모국어로 또는 귀하가 이해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아동이 다니는 학교의 교장, 학교 관리자, 특수교육 책임자 또는 캔자스주 교육부(KSDE)(주소: 900 SW Jackson St. Suite 620, Topeka, KS 66612, 전화: (800) 203-9462)에 문의하십시오. 점자, 오디오 테이프 및 기타 언어로 된 이러한 권리의 사본은 요청 시 학교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권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Families Together, Inc.*에 특수교육 안내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치타는 1-888-815-6364 또는 (316) 945-7747 음성/TTY, 가든 시티는 1-888-820-6364 또는 (620) 276-6364 음성/TTY, 토피카는 1-800-264-6343 또는 (785) 233-4777, 캔자스 시티는 1-877-499-5369 또는 (913) 287-1970로 연락하고 혹은 캔자스주 교육부에 (800) 203-9462로 연락해도 됩니다. 또한 캔자스 특수교육 과정 안내서는 캔자스주 교육부 웹사이트([www.ksde.org](http://www.ksde.org))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 절차적 보호 조치 통지

2020년 2월 개정

### 장애 아동의 부모

장애 학생 교육에 관한 연방법인 장애인 교육법(IDEA)에 따라 학교는 장애 아동의 부모인 귀하에게 IDEA 및 미국에서 제공되는 절차적 보호 조치에 대한 전체 설명이 포함된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부 규정. 이 통지의 사본은 한 학년도에 한 번만 제공해야 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1) 최초 의뢰 시 또는 귀하의 평가 요청 시 (2) 한 학년도에 34 CFR § § 300.151 ~ 300.153에 따른 첫 번째 주 민원 접수 및 § 300.507에 따른 첫 번째 적법 절차 민원 접수 시 (3) § 300.536에 따라 배치 변경을 구성하는 징계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이 내려진 경우, (4) 귀하의 요청 시 [34 CFR § 300.504(a)]

이 절차적 보호 조치 통지에는 § 300.148(공공 비용으로 아동을 사립 학교에 일방적으로 배치), § § 300.151 ~ 300.153(주 민원 절차), § 300.300(부모 동의), § § 300.502 및 300.503(IEE 및 사전 서면 통지), § § 300.505 ~ 300.518(기타 절차적 보호 조치, 예: 중재, 적법 절차 민원, 해결 절차 및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 § § 300.530 ~ 300.536(징계 조치 관련한 파트 B 규정의 서브파트 E에 있는 절차적 보호 조치) 및 § § 300.610 ~ 300.625(서브파트 F에 있는 정보의 기밀성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영재 아동의 부모

예외 학생(장애 아동 및 영재 아동)의 교육에 관한 주법인 특수 아동을 위한 캔자스 특수교육법에 따라 학교는 영재 아동의 부모인 귀하에게 주 특수교육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제공되는 절차적 보호 조치에 대한 전체 설명이 포함된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통지의 사본은 한 학년도에 한 번만 제공해야 합니다. 단, (1) 최초 의뢰 시 또는 평가 요청 시, (2) K.A.R. 91-40-51에 따라 첫 번째 주 민원 접수 시 (3) K.A.R. 91-40-28에 따라 첫 번째 적법 절차 민원 접수 시 (4) 귀하의 요청 시에도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K.A.R. 91-40-26(d)]

## IDEA의 파트 B 또는 이행 규정에서 요구하지 않는 주 부과 요건에 대한 통지

연방 규정 34 C.F.R. 300.199(a)(2)에 따라 이것은 IDEA의 파트 B 또는 그 시행 규정에서 요구하지 않는, 주에서 부과한 추가 요건에 대한 서면 통지입니다. 주 요건은 별표(\*)로 식별되며 캔자스 법령 및 규정(K.S.A 또는 K.A.R 로 표시)에 대한 인용이 있습니다.

## 목차

<b>일반 정보</b>	<b>1</b>
*연령에 적합한 동급 시설	1
*평가 절차	1
*평가 보고서	1
사전 서면 통지	1
모국어	2
이메일	2
*예외의 범주	2
*고등 교육 목표 및 전환 서비스	3
부모 동의 - 정의	3
부모 동의	3
*서비스의 중대한 변경 또는 배치의 실질적인 변경에 대한 부모 동의	5
*특정 서비스에 대한 동의 철회	5
독립 교육 평가	5
<b>정보의 기밀성</b>	<b>7</b>
정의	7
개인 식별 정보	7
부모에 대한 통지	7
액세스 권한	7
액세스 기록	8
한 명 이상의 아동에 대한 기록	8
정보의 유형 및 위치 목록	8
변호사 수임료	8
부모의 요청에 따른 기록 수정	8
심리 기회	9
심리절차	9
심리 결과	9
개인 식별 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	9
보호 조치	9
정보 파기	10
<b>주 민원 절차</b>	<b>11</b>
적법 절차 민원 및 심리 절차와 주 민원 절차의 차이점	11
주 민원 절차의 도입	11
최소한의 주 민원 절차	11
주 민원 제기	12
<b>적법 절차 민원 절차</b>	<b>14</b>
적법 절차 민원 제기	14
적법 절차 민원	14
견본 양식	15

중재 .....	16
해결 절차 .....	17
<b>적법 절차 민원에 대한 심리 .....</b>	<b>18</b>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 .....	18
심리 권리 .....	18
심리 결정 .....	19
<b>항소 .....</b>	<b>21</b>
결정의 최종성, 항소, 공정한 검토 .....	21
심리와 검토의 일정 및 편의성 .....	21
민사 소송(소송을 제기하는 기간 포함) .....	22
적법 절차 민원 및 심리가 계류 중인 동안 아동의 배치 .....	22
변호사 수입료 .....	23
<b>장애 아동(영재 아님)을 징계할 때의 절차 .....</b>	<b>25</b>
교직원의 권한 .....	25
징계 처분으로 인한 배치 변경 .....	27
환경의 결정 .....	27
항소 .....	27
항소 중 배치 .....	28
아직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적격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보호 .....	28
법 집행 기관 및 사법 당국에 의한 의뢰 및 조치 .....	29
<b>부모가 공공 비용으로 아동을 사립 학교에 일방적으로 배치하는 것에 대한 요건 .....</b>	<b>30</b>
사립 학교에 자발적으로 등록된 아동에 대한 연방정부 요건 .....	30
사립 학교에 자발적으로 등록된 아동에 대한 주정부 요건 .....	30
FAPE가 문제가 되는 경우 .....	30

## 일반 정보

### \*연령에 적합한 등급 시설

#### K.A.R. 91-40-52(d)

예외 아동을 위한 모든 시설은 비예외 아동을 위한 시설과 비슷해야 합니다. 또한 예외 아동을 위한 모든 시설은 연령에 적합한 환경이어야 하며 각 환경은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에 적합해야 합니다.

### \*평가 절차

#### K.A.R. 91-40-7(c)

위원회는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 평가를 위해 공립 학교에 등록된 예외 아동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1. 교직원이 일반 교육 개입 및 전략이 아동의 관심 영역을 다루기에 부적절하다는 데이터 기반 문서를 가지고 있음
2. 교직원이 의뢰 전 또는 의뢰의 일환으로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나타내는 데이터 기반 문서를 가지고 있음 (a) 아동이 자격을 갖춘 직원이 제공하는 정규 교육 환경에서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았음 (b)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수업 중 학생의 진행 상황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평가되었음 (c) 평가 결과가 아동의 부모에게 제공되었음 (d) 평가 결과로 평가가 적절함을 알 수 있음
3. 아동의 부모가 아동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고 서면 동의를 하고 위원회가 아동에 대한 평가가 적절하다고 동의함

### \*평가 보고서

#### K.A.R. 91-40-10(a)

평가 또는 재평가가 완료된 후 의심되는 예외의 범주와 관계없이 서면 평가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 사전 서면 통지

#### 34 CFR § 300.503, K.S.A. 72-3430(b)(2), K.S.A. 72-3432; K.A.R. 91-40-26

### 통지

해당 교육구는 다음과 같이 하기 전에 합당한 기간 내에 예외 아동의 부모인 귀하에게 서면 통지(특정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아동의 식별, 평가 또는 교육적 배치, 또는 아동에게 적절한 무상 공교육(FAPE) 제공을 시작하거나 변경할 것을 제안함
2. 아동의 식별, 평가 또는 교육 배치 또는 아동에 대한 FAPE 제공을 시작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거부함

### 통지 내용

서면 통지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 해당 교육구가 제안하거나 거부하는 조치를 설명함
2. 해당 교육구가 조치를 제안하거나 거부하는 이유를 설명함
3. 해당 교육구가 조치 제안 또는 거부 결정에 사용한 각 평가 절차, 평가, 기록 또는 보고를 설명함
4. IDEA 파트 B의 절차적 보호 조치 조항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다는 진술을 포함함

5. 해당 교육구가 제안하거나 거부하는 조치가 평가를 위한 초기 의뢰가 아닌 경우 절차적 보호 조치에 대한 설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줌
6. IDEA 파트 B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할 수 있는 리소스를 포함함
7. 아동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팀이 고려한 기타 선택지와 이러한 선택지가 거부된 이유를 설명함
8. 해당 교육구에서 조치를 제안하거나 거부한 다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제공함

###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지

통지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해야 함
2. 명백히 실현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의 모국어 또는 귀하가 사용하는 기타 의사소통 방식으로 제공해야 함

귀하의 모국어 또는 기타 의사소통 방식이 문자 언어가 아닌 경우, 해당 교육구는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1. 통지가 귀하를 위해 구두 또는 기타 수단으로 귀하의 모국어 또는 기타 의사소통 방식으로 번역되어 있음
2. 귀하가 통지 내용을 이해함
3.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했다는 서면 증거가 있음

### 모국어

#### 34 CFR § 300.29, K.A.R. 91-40-1(qq)

모국어는 영어 능력이 제한된 개인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 다음을 의미합니다.

1. 그 사람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또는 아동의 경우 해당 아동의 부모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2. 아동과의 모든 직접적인 접촉(아동에 대한 평가 포함), 가정이나 학습 환경에서 아동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청각 장애 또는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문자 언어가 없는 사람의 경우 의사소통 방식은 그 사람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예: 수화, 점자 또는 구두 의사소통).

### 이메일

#### 34 CFR § 300.505

해당 교육구가 문서를 이메일로 수신할 선택권을 부모에게 주는 경우, 귀하는 다음을 이메일로 수신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사전 서면 통지
2. 절차적 보호 조치 통지 그리고
3. 적법 절차 민원 관련 통지

### \*예외의 범주

#### K.S.A. 72-3404(g), K.A.R. 91-40-1(w), K.A.R. 91-40-1(bb)

캔자스 특수교육 법률 및 규정에 포함된 예외의 범주에는 학령기의 "영재" 아동의 범주가 포함됩니다.

**\*고등 교육 목표 및 전환 서비스****K.S.A. 72-3429(c)(8) 및 K.A.R. 91-40-1(uuu)**

14세부터 시작하여 매년 업데이트되는 장애 아동의 IEP에는 (a) 훈련, 교육, 고용 및 해당되는 경우 독립적인 생활 기술과 관련된 연령에 적합한 전환 평가를 기반으로 한 적절하고 측정 가능한 고등 교육 목표 (b) 아동이 명시된 고등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적절한 학습 과정을 포함한 전환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부모 동의 - 정의****34 CFR § 300.9, K.A.R. 91-40-1 (l)****동의**

동의를 귀하가 다음과 같이 함을 의미합니다.

1. 동의를 구하는 조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모국어 또는 기타 의사소통 방식(예: 수화, 점자 또는 구두 의사소통)으로 충분히 제공받음
2. 해당 조치를 이해하고 서면으로 동의하며, 동의를 통해 해당 조치를 설명하고 공개될 기록(있는 경우)과 공개 대상을 나열함
3. 동의는 자발적이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이해함

아동이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후 동의를 철회(취소)하려면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동의를 철회하더라도 동의한 후 철회하기 전에 발생한 조치는 무효화(실행 취소)되지 않습니다. 또한, 교육구는 귀하의 동의 철회 후 아동의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수령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기 위해 아동의 교육 기록을 수정(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 동의****34 CFR § 300.300, K.A.R. 91-40-27****1차 평가에 대한 동의**

해당 교육구는 **사전 서면 통지 및 부모 동의 표제에 설명된 대로 아동이 IDEA의 파트 B 또는 주법에 따라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아동에 대한 1차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안된 조치에 대한 사전 서면 통지를 귀하에게 먼저 제공하고 귀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해당 교육구는 귀하의 아동이 예외 아동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1차 평가에 대해 귀하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1차 평가에 귀하가 동의했다고 해서 해당 교육구가 아동에게 예외적으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데 귀하가 동의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해당 교육구는 다른 파트 B 또는 주법 요건이 교육구에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한, 1차 평가와 관련된 한 서비스 또는 활동에 대한 동의 거부를 귀하 또는 귀하의 아동이 다른 서비스, 혜택 또는 활동을 거부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아동이 공립 학교에 등록되어 있거나 귀하가 아동을 공립 학교에 등록하려고 추진하고 있으며 귀하가 동의 제공을 거부했거나 1차 평가에 대한 동의 제공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교육구는 IDEA 또는 주법 중재 또는 적법 절차 민원, 해결 회의,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 절차를 통해 아동에 대한 1차 평가를 수행하려고 추진할 수 있으나 의무는 아닙니다. 해당 교육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귀하의 아동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지 않는 경우 아동을 찾고 식별하고 평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 주 피후견인의 1차 평가에 대한 특별 규칙

주 피후견인(IDEA에서 사용됨)은 아동이 살고 있는 주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1. 위탁 아동 2. 주법에 따라 주 피후견인으로 간주되는 아동 3. 공공 아동 복지 기관의 보호를 받는 아동을 의미합니다. (주 피후견인에는 IDEA에서 사용된 부모의 정의를 충족하는 위탁 부모가 있는 위탁 아동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동이 주 피후견인이고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 교육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아동이 예외 아동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1차 평가에 대해 부모 동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1. 교육구가 아동의 부모를 찾기 위한 합당한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찾을 수 없음
2. 부모의 권리가 주법에 따라 종료되었음
3. 판사가 부모가 아닌 개인에게 교육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해당 개인이 1차 평가에 동의했음

### 서비스에 대한 부모 동의

해당 교육구는 예외 아동에게 처음에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귀하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교육구는 예외 아동에게 처음에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귀하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귀하가 아동이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처음에 받는 것에 대한 동의 제공 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그러한 동의를 거부하거나 나중에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취소)하는 경우, 해당 교육구는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아동의 IEP 팀에서 권장)가 귀하의 동의 없이 아동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동의 또는 결정을 얻기 위해 절차적 보호 조치(즉, 중재, 적법 절차 민원, 해결 회의 또는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아동이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처음에 받는 것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동의 제공 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나중에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취소)하고 교육구가 귀하의 동의를 구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아동에게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교육구는

1. 귀하의 아동에게 적절한 무상 공교육(FAPE)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아동에게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건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2. 귀하에게 동의를 요청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해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회의를 열거나 아동을 위한 IEP를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가 귀하의 아동에게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처음 제공한 후 언제든지 모든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철회(취소)하는 경우, 교육구는 해당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해당 서비스를 중단하기 전에 **사전 서면 통지** 표지에 설명된 대로 사전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 재평가에 대한 부모 동의

해당 교육구는 다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아동을 재평가하기 전에 귀하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아동의 재평가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얻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했음, **그리고**
2. 귀하가 응답하지 않았음

귀하가 아동의 재평가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교육구는 중재, 적법 절차 민원, 해결 회의,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 절차를 통해 아동의 재평가를 추진하여 아동의 재평가에 대한 동의 거부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1차 평가와 마찬가지로, 해당 교육구는 이러한 방식으로 재평가 추진을 거부하더라도 IDEA의 파트 B 또는 주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지 않습니다.



### 부모 동의를 얻기 위한 합당한 노력에 대한 문서화

해당 학교는 1차 평가에 대한 동의를 얻고, 처음으로 재평가를 위해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1차 평가를 위해 주 피후견인의 부모를 찾으려고 한 합당한 노력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이러한 영역에서 교육구가 시도한 기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전화를 걸거나 통화를 시도한 세부 기록 및 통화 결과에 대한 상세한 기록
2. 귀하에게 보낸 서신 사본 및 받은 모든 응답
3. 귀하의 자택 또는 직장 방문 및 방문 결과에 대한 상세한 기록

### 기타 동의 요건

해당 교육구가 다음을 수행하기 전까지는 귀하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1. 아동의 평가 또는 재평가의 일환으로 기존 데이터를 검토함
2. 테스트 또는 평가 전에 모든 아동의 부모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테스트 또는 기타 평가를 아동에게 제공함

귀하가 자비로 아동을 사립 학교에 등록했거나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데 아동의 1차 평가나 재평가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 제공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교육구는 분쟁 해결 절차(예: 중재, 적법 절차 민원, 해결 회의 또는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아동이 공평한 서비스(부모에 의해 사립 학교에 배치된 예외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서비스의 중대한 변경 또는 배치의 실질적인 변경에 대한 부모 동의

**K.S.A. 72-3430(b)(6), K.S.A. 72-3404(aa), K.S.A. 72-3404(bb), K.A.R. 91-40-27(a)(3), K.A.R. 91-40-1(mm) 및 91-40-1(sss)**

교육구는 예외 아동에 대해 '서비스의 중대한 변경' 또는 '배치의 실질적인 변경'을 하기 전에 부모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서비스의 중대한 변경은 특수교육 서비스, 관련 서비스 또는 IEP에 명시된 예외 아동의 서비스 기간 또는 빈도가 25%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입니다. 배치의 실질적인 변경은 아동의 수업일 중 25% 이상 동안 덜 제한적인 환경에서 더 제한적인 환경으로 또는 더 제한적인 환경에서 덜 제한적인 환경으로 예외 아동이 이동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 \*특정 서비스에 대한 동의 철회

**K.A.R. 91-40-1(l)(3)(C) 및 K.A.R. 91-40-27(k)**

아동이 적절한 무상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의 취소 중인 서비스나 배치가 아동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IEP 팀이 서면으로 증명하는 경우, 부모는 특정 서비스 또는 배치에 대한 동의를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 독립 교육 평가

**34 CFR § 300.502, K.A.R. 91-40-12**

#### 일반

아래에 설명된 바와 같이, 귀하는 해당 교육구에서 받은 아동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동에 대한 독립 교육 평가(IEE)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가 독립 교육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교육구는 귀하가 독립 교육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위치와 독립 교육 평가에 적용되는 교육구의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정의

독립 교육 평가는 아동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구에 고용되지 않은 자격을 갖춘 심사관이 수행하는 평가를 의미합니다.

공공 비용은 교육구가 평가에 드는 전체 비용을 지불하거나 IDEA 파트 B의 조항에 따라 평가가 귀하에게 무료로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 주는 해당 법 파트 B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주에서 제공되는 어떤 출처의 주, 지방, 연방 및 민간 지원이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 비용으로 평가할 권리

귀하는 교육구에서 얻은 아동 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음 조건에 따라 공공 비용으로 아동에 대한 독립 교육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 공공 비용으로 아동에 대한 독립 교육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교육구는 불필요한 지체 없이 (a) 귀하의 아동에 대한 평가가 적절함을 보여주기 위해 심리를 요청하는 적법 절차 민원을 제기해야 하거나, 또는 (b) 귀하가 받은 아동의 평가가 해당 교육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교육구가 심리에서 입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 비용으로 독립 교육 평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2. 교육구가 심리를 요청하고 귀하의 아동에 대한 교육구의 평가가 적절하다는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귀하는 독립 교육 평가를 받을 권리가 여전히 있지만 이를 공공 비용으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3. 귀하가 아동에 대한 독립 교육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교육구는 귀하에게 교육구에서 받는 아동 평가에 반대하는 이유를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반드시 설명을 제공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 교육구는 아동에 대한 독립 교육 평가를 공공 비용으로 제공하거나 아동에 대한 교육구의 평가를 방어하기 위해 적법 절차 민원을 제기하여 적법 절차 심리를 요청하는 것을 부당하게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아동 평가를 해당 교육구에서 실시할 때마다 귀하는 공공 비용으로 아동에 대한 독립 교육 평가를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 개시 평가

아동에 대한 독립 교육 평가를 공공 비용으로 받거나 자비로 받은 아동에 대한 평가를 교육구와 공유하는 경우:

1. 해당 교육구는 해당 평가가 독립 교육 평가에 대한 교육구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아동에 대한 적절한 무상 공교육(FAPE) 제공과 관련하여 내려진 결정에서 아동의 평가 결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2. 귀하 또는 해당 교육구는 아동에 관한 적법 절차 심리에서 평가를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심리 담당관에 의한 평가 요청

심리 담당관이 적법 절차 심리의 일환으로 아동에 대한 독립 교육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 비용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 교육구 기준

독립 교육 평가가 공공 비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평가 장소 및 심사관의 자격을 포함하여 평가를 받는 기준은 교육구가 평가를 개시할 때 사용하는 기준과 동일해야 합니다(이러한 기준이 독립 교육 평가에 대한 귀하의 권리와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위에 설명된 기준을 제외하고, 교육구는 공공 비용으로 독립 교육 평가를 받는 것과 관련된 조건이나 일정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 기밀 정보

### 정의

#### 34 CFR § 300.611, K.A.R. 91-40-50

정보의 기밀성 표제에 사용된 대로,

- 파기는 더 이상 개인 식별이 가능하지 않도록 개인 식별 정보를 물리적으로 파기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교육 기록은 34 CFR 파트 99(1974년 가족 교육권 및 프라이버시법(FERPA) 시행 규정, 20 U.S.C. 1232g)에 있는 '교육 기록'의 정의에서 다른 기록 유형을 의미합니다.
- 참여 기관은 IDEA 파트 B 또는 주법에 따라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 유지 또는 사용하거나 정보를 얻는 모든 교육구, 관청 또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 개인 식별 정보

#### 34 CFR § 300.32

개인 식별 정보는 다음 정보가 포함됩니다.

- (a) 아동, 아동의 부모 또는 기타 가족 구성원의 이름
- (b) 아동의 주소
- (c) 아동의 사회보장번호 또는 학생 번호와 같은 개인 식별자
- (d) 아동을 합리적으로 확실하게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개인 특성 또는 기타 정보 목록

### 부모에 대한 통지

#### 34 CFR § 300.612, K.A.R. 91-40-50(b)

주 교육청은 다음을 포함하여 개인 식별 정보의 기밀성에 대해 부모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적절한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주에 있는 다양한 인구 집단의 모국어로 통지가 제공되는 수준에 대한 설명
2. 개인 식별 정보가 유지되는 아동, 추구하는 정보의 유형, 국가가 정보 수집에 사용하려는 방법(정보 수집 출처 포함), 정보의 용도에 대한 설명
3. 개인 식별 정보의 저장, 제3자에 대한 공개, 보유 및 파기와 관련하여 참여 기관이 따라야 하는 정책 및 절차 요약
4. 가족 교육권 및 프라이버시법(FERPA) 및 34 CFR 파트 99의 시행 규정에 따른 권리를 포함하여 이 정보에 관한 부모와 아동의 모든 권리에 대한 설명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식별, 위치 확인 또는 평가하기 위한 주요 활동("아동 찾기"라고도 함) 전에 해당 통지를 신문이나 기타 매체 또는 둘 다에 게시하거나 발표해야 하며, 이러한 활동을 주 전역에 알리려면 발행 부수가 충분해야 합니다.

### 액세스 권한

#### 34 CFR § 300.613, K.A.R. 91-40-50(b)

참여 기관은 IDEA 파트 B 및 주법에 따라 교육구에서 수집, 유지 또는 사용하는 아동과 관련된 모든 교육 기록을 조사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참여 기관은 불필요한 지연 없이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또는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장애 아동의 징계에 관한 해결 회의 또는 심리 포함)에 관한 회의에 앞서 아동에 대한 교육 기록을 조사 및 검토하라는 귀하의 요청에 따라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요청 후 45일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교육 기록을 조사하고 검토할 수 있는 귀하의 권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기록에 대한 설명 및 해석을 합당하게 요청하는 것과 관련하여 참여 기관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권리
2. 기록 사본을 받지 않아 기록을 효과적으로 검사하고 검토할 수 없는 경우 참여 기관에 기록 사본 제공을 요청할 권리
3. 대리인에게 기록을 조사하고 검토하도록 할 권리

참여 기관은 귀하가 후견, 별거, 이혼 등의 문제를 관장하는 해당 주법에 따른 권한이 없다는 통지는 받지 않는 한 귀하에게 아동과 관련된 기록을 조사하고 검토할 권한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 접근 기록

#### 34 CFR § 300.614, K.A.R. 91-40-50(b)

각 참여 기관은 당사자의 이름, 액세스 권한이 부여된 날짜, 당사자가 기록을 사용하도록 승인된 목적을 포함하여 IDEA의 파트 B 또는 주법에 따라 수집, 유지 또는 사용되는 교육 기록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획득한 당사자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부모 및 참여 기관의 승인된 직원에 의한 액세스 제외).

### 한 명 이상의 아동에 대한 기록

#### 34 CFR § 300.615, K.A.R. 91-40-50(b)

교육 기록에 둘 이상의 아동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아동의 부모는 아동과 관련된 정보만 조사 및 검토하거나 특정 정보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 정보의 유형 및 위치 목록

#### 34 CFR § 300.616, K.A.R. 91-40-50(b)

요청 시 각 참여 기관은 해당 기관에서 수집, 유지 또는 사용하는 교육 기록의 유형 및 위치 목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 수수료

#### 34 CFR § 300.617, K.A.R. 91-40-50(b)

각 참여 기관은 귀하가 해당 기록을 조사하고 검토할 권리를 행사하는 데 수수료가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IDEA 파트 B 또는 주법에 따라 귀하를 위해 만든 기록 사본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참여 기관은 IDEA 파트 B 또는 주법에 따라 정보를 검색 또는 조회하는 데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부모 요청 시 기록 수정

#### 34 CFR § 300.618, K.A.R. 91-40-50(b)

IDEA의 파트 B 또는 주법에 따라 수집, 유지 또는 사용되는 교육 기록의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를 일으키거나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귀하는 해당 정보를 유지하는 공공 기관에 정보를 수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 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합리적인 기간내에 귀하의 요청에 따라 정보의 수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참여 기관이 귀하의 요청에 따른 정보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 귀하에게 해당 거부 사실을 알리고 **심리 기회 표제에 설명된 대로 심리 권리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심리 기회****34 CFR § 300.619, K.A.R. 91-40-50(b)**

참여 기관은 요청이 있을 경우 귀하에게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교육 기록에 있는 정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심리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심리 절차****34 CFR § 300.621, K.A.R. 91-40-50(b)**

교육 기록에 있는 정보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열리는 심리는 가족 교육권 및 프라이버시법(FERPA)의 심리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청문회 결과****34 CFR § 300.620, K.A.R. 91-40-50(b)**

심리 결과 참여 기관에서 해당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아동의 개인정보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에 따라 정보를 변경하고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심리 결과 참여 기관에서 해당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아동의 개인정보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참여 기관이 보유한 기록, 정보에 대한 의견 진술 또는 참여 기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제시하는 진술에 대해 귀하가 지닌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아동의 기록에 있는 설명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 참여 기관에서 기록 또는 논란이 되는 부분을 유지하는 한, 참여 기관이 아동 기록의 일부로 유지해야 합니다.
2. 참여 기관이 아동의 기록 또는 논란이 되는 정보를 당사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그 당사자에게 설명도 공개해야 합니다.

**개인 식별 정보의 공개에 대한 동의****34 CFR § 300.622, K.A.R. 91-40-50(b)**

정보가 교육 기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가족 교육권 및 프라이버시법(FERPA)에 따라 부모의 동의 없는 공개가 승인되지 않는 한, 참여 기관의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개인 식별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귀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아래에 명시된 상황을 제외하고, IDEA 파트 B 또는 주법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개인 식별 정보가 참여 기관의 관계자에게 공개되기 전까지는 귀하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불하는 참여 기관의 직원에게 개인 식별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부모의 동의 또는 주법에 따라 성년에 도달한 적격 아동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립 학교가 위치한 교육구 및 귀하가 거주하는 공립 교육구의 공무원. 아동이 귀하가 거주하는 교육구에 소재하지 않은 사립 학교에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하려는 경우, 사립 학교가 위치한 교육구의 직원과 귀하가 거주하는 교육구의 직원 간에 아동에 대한 개인 식별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귀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보호 조치****34 CFR § 300.623, K.A.R. 91-40-50(b)**

각 참여 기관은 수집, 저장, 공개 및 파기 단계에서 개인 식별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해야 합니다.

각 참여 기관의 직원 한 명이 개인 식별 정보의 기밀성을 보장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IDEA의 파트 B, 주법, 가족 교육권 및 프라이버시법(FERPA)에 따른 기밀성에 대한 주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교육 또는 지침을 받아야 합니다.

각 참여 기관은 공개 조사를 위해 개인 식별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 기관 내 직원의 이름과 직위의 최신 목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 정보 파기

---

#### **34 CFR § 300.624, K.A.R. 91-40-50(b)**

교육구는 IDEA의 파트 B 또는 주법에 따라 수집, 유지 또는 사용되는 개인 식별 정보가 아동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귀하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정보는 귀하의 요청에 따라 파기해야 합니다. 다만, 아동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학년, 출석 기록, 출석한 수업, 이수한 학년, 이수한 연도 등의 영구 기록은 기간 제한 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주 민원 절차

### 적법 절차 민원 및 심리 절차와 주 민원 절차의 차이점

IDEA의 파트 B와 주법에 대한 규정에는 주 민원과 적법 절차 민원에 대한 별도의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설명된 바와 같이 모든 개인 또는 조직은 교육구, 주 교육청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이 파트 B 또는 주법 요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주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 또는 교육구만이 예외 아동의 식별, 평가 또는 교육 배치 또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무상 공교육(FAPE) 제공을 개시 또는 변경하기 위한 제안 또는 거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적법 절차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 교육청의 직원은 일정이 적절하게 연장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60일일의 일정 기간 내에 주 민원을 해결해야 하지만, 심리 담당관이 귀하의 요청 또는 교육구의 요청에 따라 특정한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한, 공정한 심리 담당관은 (해결 회의나 중재를 통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적법 절차 민원을 듣고 이 문서의 해결 절차 표제에 설명된 대로 해결 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에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주 민원 및 적법 절차 민원, 해결 및 심리 절차는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 교육청은 귀하가 적법 절차 민원을 제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견본 양식** 표제에 설명된 대로 귀하 또는 다른 당사자가 주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 주 민원 절차의 도입

#### 34 CFR § 300.151, K.S.A. 72-3406

##### 일반

각 주 교육청에는 다음에 대한 서면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1. 다른 주의 조직 또는 개인이 제기한 민원을 포함하여 모든 민원 해결
2. 주 교육청에 민원 제기
3. 부모 교육 및 정보 센터, 보호 및 옹호 기관, 자립 생활 센터 및 기타 적절한 기관을 포함하여 부모와 기타 관심 있는 개인에게 주 민원 절차를 널리 홍보

##### 적절한 서비스 거부에 대한 구제

주 교육청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 알려지게 된 주 민원을 해결할 때 주 교육청은 다음 사항을 해결해야 합니다.

1. 아동의 요구를 해결하는 데 적절한 시정 조치(예: 보상 서비스 또는 금전적 상환)를 포함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
2. 모든 예외 아동을 위한 서비스를 미래에 적절히 제공하는 것

### 최소한의 주 민원 절차

#### 34 CFR § 300.152, K.A.R. 91-40-51

##### 시한, 최소한의 절차

각 주 교육청은 다음 목적을 위해 민원이 제기된 후 60일일의 시한을 주 민원 절차에 포함해야 합니다.

1. 주 교육청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독립적인 현장 조사를 수행합니다.
2. 민원인에게 민원의 주장에 대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추가 정보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3. 최소한 다음을 포함하여 교육구 또는 기타 공공 기관에 민원에 응답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a) 기관의 선택에 따라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제안 및 (b) 민원을 제기한 부모와 기관이 중재에 참여하기로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기회
4. 모든 관련 정보를 검토하고 교육구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이 IDEA 파트 B의 요건 또는 주법의 요건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5. 민원의 각 주장을 해결하고 다음을 포함하는 서면 결정을 민원인에게 내립니다. (a) 사실 확인 및 결론 및 (b) 주 교육청의 최종 결정 이유

### 시간 연장, 최종 결정, 이행

위에 설명된 주 교육청의 절차는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60일일의 시한의 시한 연장을 허용합니다. (a) 특정 주 민원과 관련하여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함 또는 (b) 귀하와 관련 교육구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이 주에서 가능한 경우 중재 또는 대안적 분쟁 해결 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간 연장에 자발적으로 동의함
- 필요한 경우 다음을 비롯하여 주 교육청의 최종 결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포함합니다. (a) 기술 지원 활동 (b) 협상 및 (c) 규정 준수

### 주 민원 및 적법 절차 심리

**적법 절차 민원 제기** 표제에 설명된 대로 적법 절차 심리의 대상이기도 한 주 민원이 접수된 경우 또는 주 민원에 여러 문제가 포함되어 있고 그중 하나 이상이 이러한 심리의 일환인 경우 주 정부는 심리가 끝날 때까지 적법 절차 심리에서 다루는 주 민원의 일부를 보류해야 합니다. 주 민원의 문제 중 적법 절차 심리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는 위에 설명된 시한 및 절차를 사용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주 민원에서 제기된 문제가 이전에 동일한 당사자(예: 귀하와 교육구)가 관련된 적법 절차 심리에서 결정된 경우, 적법 절차 심리 결정은 해당 문제에 대해 구속력이 있으며 주 교육청은 민원인에게 결정이 구속력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교육구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이 적법 절차 심리 결정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민원은 주 교육청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 주 민원 제기

#### 34 CFR § 300.153, K.A.R. 91-40-51

조직 또는 개인은 위에 설명된 절차에 따라 서명된 서면의 주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 민원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교육구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이 IDEA의 파트 B 또는 34 CFR 파트 300에 있는 그 이행 규정의 요건 혹은 예외 아동을 위한 캔자스 특수교육법 또는 91-40-(캔자스주 교육부 91 기관 제40조 특수교육)에 있는 그 이행 규정의 요건을 위반했다는 진술
- 진술의 근거가 되는 사실
- 민원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서명 및 연락처 정보
- 특정 아동에 대한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
  - 아동의 이름 및 거주지 주소
  - 아동이 다니는 학교의 이름
  - 노숙 아동 또는 청소년의 경우, 아동의 이용 가능한 연락처 정보 및 아동이 다니는 학교의 이름
  - 문제와 관련된 사실을 포함하여 아동 문제의 성격에 대한 설명
  - 민원이 제기된 시점에 민원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알고 있고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문제에 대해 제안한 해결책

**민원은 국가 민원 절차의 도입 표제에 설명된 대로 민원이 접수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위반을 주장해야 합니다.**

주 민원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민원을 주 교육청에 제기함과 동시에 해당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구 또는 기타 공공 기관에 민원 사본을 전달해야 합니다.



## 적법 절차 민원 절차

### 적법 절차 민원 제기

#### 34 CFR § 300.507, K.S.A. 72-3415

##### 일반

귀하 또는 교육구는 아동의 식별, 평가 또는 교육 배치 또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무상 공교육(FAPE) 제공을 개시 또는 변경하기 위한 제안 또는 거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적법 절차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적법 절차 민원은 적법 절차 민원의 근거가 되는 주장된 행동에 대해 귀하 또는 교육구가 알게 되었거나 알았어야 하는 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위반을 주장해야 합니다.

위의 일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일정 내에 적법 절차 민원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교육구가 민원에서 확인된 문제를 해결했다고 명확하게 잘못 진술했음
2. 교육구가 IDEA의 파트 B 또는 주법에 따라 귀하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귀하에게 제공하지 않았음

##### 부모를 위한 정보

교육구는 귀하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귀하 또는 교육구가 적법 절차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또는 저렴한 법률 및 기타 관련 서비스에 대해 귀하에게 알려야 합니다.

### 적법 절차 민원

#### 34 CFR § 300.508, K.S.A. 72-3415

##### 일반

심리를 요청하려면 귀하 또는 교육구(또는 귀하의 변호사 또는 교육구의 변호사)가 상대방에게 적법 절차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해당 민원은 아래 나열된 모든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 교육청에 민원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 민원의 내용

적법 절차 민원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아동의 이름
2. 아동의 거주지 주소
3. 아동의 학교 이름
4. 아동이 노숙 아동 또는 청소년인 경우 아동의 연락처 정보 및 아동의 학교 이름
5. 문제와 관련된 사실을 포함하여 제안되거나 거부된 조치와 관련된 아동 문제의 성격에 대한 설명
6. 당시에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귀하 또는 교육구)가 알고 있고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문제에 대해 제안한 해결책

##### 적법 절차 민원에 대한 심리 전에 필요한 통지

귀하 또는 교육구는 귀하 또는 교육구(또는 귀하의 변호사 또는 교육구의 변호사)가 위에 나열된 정보가 포함된 적법 절차 민원을 제기할 때까지 적법 절차 심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민원의 충분성

적법 절차 민원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적법 절차 민원을 접수한 당사자(귀하 또는 교육구)가 민원 접수 후 15일 이내에 심리 담당관과 상대방에게 적법 절차 민원이 위에 나열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적법 절차 민원은 (위의 내용 요건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접수 당사자(귀하 또는 교육구)가 적법 절차 민원이 불충분하다고 간주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리 담당관은 적법 절차 민원이 위에 나열된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고, 이를 귀하와 교육구에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 민원 수정

귀하 또는 교육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민원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서면으로 변경 사항을 승인하고 **해결 절차** 표제에 설명된 해결 회의를 통해 적법 절차 민원을 해결할 기회가 주어짐
2. 적법 절차 심리가 열리기 5일 전까지 심리 담당관이 수정을 승인함

민원을 제기하는 당사자(귀하 또는 교육구)가 적법 절차 민원을 수정하는 경우, 해결 회의 일정(민원 접수 후 15일 이내) 및 해결 기간(민원 접수 후 30일 이내)은 수정된 민원이 제기된 날에 다시 시작합니다.

## 적법 절차 민원에 대한 지역 교육 기관(LEA) 또는 교육구의 대응

교육구가 귀하의 적법 절차 민원에 포함된 주제와 관련하여 **사전 서면 통지** 표제에 설명된 대로 귀하에게 사전 서면 통지를 보내지 않은 경우, 교육구는 적법 절차 민원을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이 포함된 응답을 보내야 합니다.

1. 교육구가 적법 절차 민원에서 제기된 조치를 제안하거나 거부한 이유에 대한 설명
2. 아동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팀이 고려한 다른 선택지와 이러한 선택지가 거부된 이유에 대한 설명
3. 제안되거나 거부된 조치의 근거로 사용된 각 평가 절차, 평가, 기록 또는 보고에 대한 설명
4. 교육구가 제안하거나 거부한 조치와 관련된 기타 요인에 대한 설명

위의 1~4번 항목에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서 교육구가 귀하의 적법 절차 민원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 적법 절차 민원에 대한 상대방의 응답

바로 위에 **적법 절차 민원에 대한 지역 교육 기관(LEA) 또는 교육구의 응답** 부제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법 절차 민원을 접수한 당사자는 민원 접수 후 10일 이내에 민원의 해당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응답을 상대방에게 보내야 합니다.

## 견본 양식

### 34 CFR § 300.509,

주 교육청은 귀하가 적법 절차 민원을 제기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귀하와 다른 당사자가 주 민원을 제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견본 양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 또는 교육구는 이러한 견본 양식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적법 절차 민원 또는 주 민원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만 하면, 견본 양식이든 다른 적절한 양식이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중재

34 CFR § 300.506, K.S.A. 72-3438, K.A.R. 91-40-28(b)

### 일반

교육구는 적법 절차 민원 제기 이전에 발생한 문제를 포함하여 IDEA의 파트 B 및 주법에 따른 모든 문제와 관련된 의견 불일치를 부모와 교육구가 해결하기 위해 중재를 제공하는 절차를 개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법 절차 민원 제기** 표지에 설명된 대로 적법 절차 심리를 요청하는 적법 절차 민원을 제기했는지와 관계없이 IDEA 파트 B 또는 주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요건

이 절차에서 중재 절차는 다음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1. 귀하와 교육구가 자발적으로 중재 절차에 참여합니다.
2. 적법 절차 심리에 대한 귀하의 권리를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IDEA의 파트 B 또는 주법에 따라 제공된 기타 권리를 거부하는 데 중재 절차를 사용되지 않습니다.
3. 효과적인 중재 기술을 훈련받은 자격을 갖춘 공정한 중재자가 중재 절차를 진행합니다.

교육구는 중재 절차를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부모와 학교에 다음의 제3자(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와 만날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를 개발할 수 있으며, 만날 때 귀하가 편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합니다.

1. 적절한 대안적 분쟁 해결 기관, 또는 주 내 부모 교육 및 정보 센터 또는 커뮤니티 부모 리소스 센터와 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
2. 중재 절차의 이점을 설명하고 중재 절차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사람

주정부는 자격을 갖춘 중재자 목록을 유지하고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 교육청은 무작위, 순환 또는 기타 공정한 방식으로 중재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회의 비용을 포함하여 중재 절차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중재 절차의 각 회의는 적시에 일정이 잡혀 있어야 하며 귀하와 교육구를 위해 편리한 장소에서 열어야 합니다.

귀하와 교육구가 중재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해결 방법이 명시된 다음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 중재 절차 중에 발생한 모든 논의는 기밀로 유지하며 후속 적법 절차 심리 또는 민사 소송(법원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된 계약
2. 교육구를 구속할 권한이 있는 교육구의 대표와 귀하가 서명한 계약

서명된 서면의 중재 합의서는 관할 관할권의 모든 주 법원(주법에 따라 이러한 유형의 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있는 법원) 또는 미국 지방 법원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중재 절차에서 발생한 논의는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이 논의는 IDEA 파트 B에 따라 지원을 받는 연방 법원 또는 주 법원의 향후 적법 절차 심리 또는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중재자의 공정성

중재자는

1. 아동 교육 또는 돌봄과 관련된 주 교육청 또는 교육구의 직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2. 중재자의 객관성에 반하는 개인적 또는 직업적 이해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달리 중재자 자격이 되는 사람은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 주 교육청 또는 교육구에서 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교육구 또는 해당 기관의 직원이 아닙니다.

## 해결 절차

### 34 CFR § 300.510, K.S.A. 72-3416(a), K.A.R. 91-40-28(f), (g)

## 해결 회의

귀하의 적법 절차 민원이 접수된 후 15영업 이내에 그리고 적법 절차 심리가 시작되기 전에 교육구는 적법 절차 민원에 명시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팀의 관련 구성원 및 귀하와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회의는

1. 교육구를 대신하여 결정 권한을 가진 교육구 대표를 포함해야 합니다.
2. 귀하가 변호사를 동반하지 않는 한 교육구의 변호사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와 교육구는 회의에 참석할 IEP 팀의 관련 구성원을 결정합니다.

회의의 목적은 부모가 적법 절차 민원과 민원의 근거가 되는 사실에 대해 논의하여 교육구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결 회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귀하와 교육구가 회의를 포기하기로 서면으로 동의함
2. 귀하와 교육구가 **중재** 표제에 설명된 대로 중재 절차를 사용하기로 동의함

## 해결 기간

교육구가 적법 절차 민원 접수 후 30영업 이내에(해결 기간 동안) 귀하가 만족할 정도로 적법 절차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적법 절차 심리가 열릴 수 있습니다.

**심리 결정** 표제에 설명된 대로 최종 적법 절차 심리 결정을 내리기 위한 45영업의 일정은 아래 설명된 대로 30영업의 해결 기간 조정에 대한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30영업의 해결 기간이 만료될 때 시작됩니다.

귀하와 교육구가 해결 절차를 포기하거나 중재를 사용하기로 모두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가 해결 회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회의가 열릴 때까지 해결 절차 및 적법 절차 심리 일정이 연기됩니다.

합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그러한 노력을 문서화한 후에도 교육구가 해결 회의에 귀하가 참여하게 만들지 못하는 경우, 교육구는 30영업의 해결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심리 담당관에게 적법 절차 민원을 기각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문서화에는 다음과 같이 상호 합의된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구가 시도한 것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전화를 걸거나 통화를 시도한 세부 기록 및 통화 결과에 대한 상세한 기록
2. 귀하에게 보낸 서신 및 받은 모든 응답의 사본, 그리고
3. 귀하의 자택 또는 직장 방문 및 방문 결과에 대한 상세한 기록

교육구가 귀하의 적법 절차 민원 통지를 받은 후 15영업 이내에 해결 회의를 열지 않거나 **또는** 해결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심리 담당관에게 45영업의 적법 절차 심리 일정을 시작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30영업의 해결 기간 조정

귀하와 교육구가 해결 회의를 포기하기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45영업 일정의 적법 절차 심리가 다음날부터 시작됩니다.

중재 또는 해결 회의가 시작된 후 30영업일의 해결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귀하와 교육구가 합의가 불가능하는 데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45영업일 일정의 적법 절차 심리가 다음날부터 시작됩니다.

귀하와 교육구가 중재 절차를 사용하는 데 동의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30영업일의 해결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양측 당사자가 지속하기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중재 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 또는 교육구가 이 지속 기간 중에 중재 절차를 철회하는 경우 45영업일 일정의 적법 절차 심리가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 서면 합의

해결 회의에서 분쟁에 대한 해결에 도달하는 경우, 귀하와 교육구는 다음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 귀하와 교육구를 구속할 권한이 있는 교육구의 대표가 서명한 계약
2. 해당 주에 당사자가 해결 합의의 시행을 추진하도록 허용하는 다른 메커니즘 또는 절차가 있는 경우 관할권이 있는 주 법원(이러한 유형의 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있는 주 법원)이나 미국 지방 법원 또는 주 교육청에서 시행할 수 있는 계약

### 계약 검토 기간

귀하와 교육구가 해결 회의의 결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귀하 또는 교육구)는 귀하와 교육구가 모두 계약에 서명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 적법 절차 민원에 대한 심리

###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

34 CFR § 300.511, K.S.A. 72-3415, K.S.A. 72-3416, K.A.R. 91-40-29(b)

#### 일반

적법 절차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귀하 또는 분쟁에 관련된 교육구는 **적법 절차 민원** 및 **해결 절차** 섹션에 설명된 대로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를 열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 공정한 심리 담당관

최소한 심리 담당관은

1. 아동의 교육 또는 돌봄에 관여하는 주 교육청 또는 교육구의 직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심리 담당관으로 일하기 위해 주 교육청에서 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관의 직원이 아닙니다.
2. 심리에서 심리 담당관의 객관성과 충돌하는 개인적 또는 직업적 이해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3. IDEA 조항, IDEA와 관련된 연방 및 주 규정, 그리고 연방 및 주 법원의 IDEA에 대한 법적 해석을 잘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4. 적절한 표준 법률 관행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고 결정을 내리고 기록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5. \*처음에 적법 절차 심리관 또는 주 검토관의 자격을 갖추려면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주에서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면허를 소지한 변호사여야 합니다. K.A.R. 91-40-29(b)

각 교육구는 각 심리관의 자격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심리관 역할을 하는 사람의 목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 적법 절차 심리 주제

적법 절차 심리를 요청하는 당사자(귀하 또는 교육구)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적법 절차 심리에서 적법 절차 민원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심리 요청 일정

귀하 또는 교육구는 민원에서 해결된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거나 알았어야 하는 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 적법 절차 민원에 대한 공정한 심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 일정의 예외사항

위의 일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 절차 민원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교육구가 귀하가 민원에서 제기 중인 문제 또는 사안을 해결했다고 명확하게 잘못 진술했음
2. 교육구가 IDEA의 파트 B 또는 주법에 따라 귀하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귀하에게 제공하지 않았음

#### 심리 권리

34 CFR § 300.512, K.S.A. 72-3416(b)

#### 일반

귀하는 결정에 대한 항소, 공정한 검토 부제에 설명된 대로 적법 절차 심리(징계 절차와 관련된 심리 포함) 또는 추가 증거를 받기 위한 심리 항소에서 자신을 대변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심리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1. 변호사 및/또는 장애 아동 문제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나 훈련을 받은 사람이 동행하고 이 사람의 조언을 받을 권리
2. 심리에서 변호사의 대리를 받을 권리
3. 증거를 제시하고 대립, 반대 심문하고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권리
4. 심리 최소 5영업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은 증거를 심리에 제출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
5. 귀하의 선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축어 기록을 받을 권리
6. 귀하의 선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사실 확인 및 결정을 받을 권리

### 추가 정보 공개

적법 절차 심리 최소 영업일 5일 전까지 귀하와 교육구는 해당 날짜까지 완료된 모든 평가와 귀하 또는 교육구가 심리에서 사용할 예정인 평가를 기반으로 한 권고 사항을 서로 공개해야 합니다.

심리 담당관 또는 검토 담당관은 이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심리에서 관련 평가 또는 권고 사항을 제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심리에서 부모의 권리

귀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1. 아동을 심리에 출석시킬 권리
2. 심리를 공개할 권리
3. 심리 기록, 사실 확인, 결정을 무료로 제공받을 권리

### 심리 결정

**34 CFR § 300.513, K.S.A. 72-3416(g), K.S.A. 72-3415(f), K.S.A. 72-3418(a)**

### 심리 담당관의 결정

아동이 적절한 무상 공교육(FAPE)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 담당관의 결정은 FAPE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거 및 주장에 근거해야 합니다.

절차상의 위반을 주장하는 사안(예: '불완전한 IEP 팀')에서 심리 담당관은 절차상의 위반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아동이 FAPE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적절한 무상 공교육(FAPE)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방해한 경우
2. 아동에게 적절한 무상 공교육(FAPE)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상당히 방해한 경우
3. 아동의 교육 혜택 박탈을 유발한 경우

위에 설명된 조항 중 어떤 것도 심리 담당관이 IDEA 파트 B(34 CFR § § 300.500 ~ 300.536)에 따른 연방 규정의 절차적 보호 조치 섹션에 명시된 요건 또는 주법에 따른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도록 교육구에 명령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표제가 **적법 절차 민원 제기 적법 절차 민원 건본 양식 해결 절차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 심리 권리 및 심리 결정** (34 CFR § § 300.507 ~ 300.513, K.S.A. 72-3415 & 3416)인 어떠한 조항도 주 교육청에 적법 절차 심리 결정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귀하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 적법 절차 심리에 대한 별도 요청

IDEA의 파트 B(34 CFR § § 300.500 ~ 300.536) 또는 주법의 절차 요건에 따른 연방 규정의 절차적 보호 조치 섹션의 어떤 내용도 귀하가 이미 제기된 적법 절차 민원과 별개의 문제에 대해 별도의 적법 절차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해석될 수 없습니다.

#### **자문단 및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는 조사 결과 및 결정**

주 교육청 또는 교육구(귀하의 심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쪽)는 개인 식별 정보를 삭제한 후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적법 절차 심리에서 조사 결과 및 결정을 제공하거나 주 특수교육 자문단에 항소
2. 이러한 조사 결과와 결정을 대중에게 공개



## 항소

### 결정의 최종성 항소 공정한 검토

#### 34 CFR § 300.514, K.S.A 72-3416(h), K.S.A. 72-3418(a), (b), (c) 결정의 최종성

적법 절차 심리(장애 아동에 대한 징계 절차와 관련된 심리 포함)에서 내린 결정은 심리에 관련된 당사자(귀하 또는 교육구)가 해당 결정에 대해 주 교육청에 항소하지 않는 한 최종적입니다.

\*주 민원 절차에는 부모 또는 교육구가 민원 보고서의 조사 결과 또는 결론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K.A.R. 91-40-51(f)

#### 결정에 대한 항소, 공정한 검토

당사자(귀하 또는 교육구)가 심리의 조사 결과와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주 교육청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가 제기되면 주 교육청은 항소 결과와 결정에 대해 공정한 검토를 수행해야 합니다. 검토를 수행하는 직원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전체 심리 기록을 조사합니다.
2. 심리 절차가 적법 절차의 요건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3. 필요한 경우 추가 증거를 찾습니다. 추가 증거를 얻기 위해 심리가 열리는 경우, **심리 권리** 표제에 설명된 심리 권리가 적용됩니다.
4. 검토 담당관의 재량에 따라 당사자에게 구두나 서면 주장 또는 둘 다 할 기회를 줍니다.
5. 검토 완료 후 독립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6. 귀하와 교육구에 귀하의 선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사실 확인 및 결정 사본을 제공합니다.

#### 자문단 및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는 조사 결과 및 결정

주 교육청은 개인 식별 정보를 삭제한 후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주정부 특수교육 자문단에 항소 결과 및 결정 제공
2. 이러한 조사 결과와 결정을 대중에게 공개

#### 검토 결정의 최종성

검토 담당관이 내린 결정은 귀하 또는 교육구가 **민사 소송(소송을 제기하는 기간 포함)** 표제에 설명된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최종적입니다.

#### 심리와 검토의 일정 및 편의성

#### 34 CFR § 300.515, K.A.R. 91-40-28(f), (g), K.S.A. 72-3418(b)

교육구는 해결 회의를 위한 30일간의 기간이 만료된 후 45일 이내에 **또는 30일간의 해결 기간 조정** 부제에 설명된 대로 조정된 기간이 만료된 후 45일 이내에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심리에서 최종 결정을 내림
2. 결정 사본을 귀하와 교육구에 우편 발송

주 교육청은 검토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1. 검토에서 최종 결정을 내림

## 2. 결정 사본을 귀하와 교육구에 우편 발송

심리 또는 검토 담당관은 귀하 또는 교육구가 특정한 일정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위에 설명된 기간(심리 결정의 경우 45일, 검토 결정의 경우 30일)을 초과하는 특정 시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구두 변론이 따르는 각 심리 및 검토는 귀하와 아동에게 합리적으로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 민사 소송(소송을 제기하는 기간 포함)

#### 34 CFR § 300.516, K.S.A. 72-3418(c), (d), (e)

##### 일반

주 차원의 검토 결과 및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당사자(귀하 또는 교육구)는 적법 절차 심리(장애 아동에 대한 징계 절차 관련 심리 포함)의 대상이었던 문제와 관련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분쟁 금액과 관계없이 주 관할 법원(이러한 유형의 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있는 주 법원) 또는 미국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시한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귀하 또는 교육구)는 주 검토 직원의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K.S.A. 72-3418(d)).

##### 추가 절차

민사 소송에서 법원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행정 절차의 기록을 접수합니다.
2. 귀하의 요청 또는 교육구의 요청에 따라 추가 증거를 심리합니다.
3. 증거의 우위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고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구제책을 허용합니다.

적절한 상황에서 사법적 구제에는 사립 학교 등록금 상환 및 보상 교육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지방 법원의 관할

미국 지방 법원은 분쟁 금액과 관계없이 IDEA 파트 B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 대해 판결할 권한이 있습니다.

##### 해석의 규칙

IDEA 파트 B의 어떠한 조항도 미국 헌법, 1990년 미국 장애인법, 1973년 재활법 표제 V(섹션 504) 또는 장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타 연방법에 의거하여 이용 가능한 권리, 절차 및 구제책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단, IDEA 파트 B에 의거하여 구제를 구하는 이러한 법률에 따라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위에 설명된 적법 절차가 당사자가 IDEA 파트 B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경우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한도 내에서 소진되어야 합니다. 즉, 이는 귀하가 IDEA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것과 중복되는 다른 법에 의거한 구제를 받을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른 법에 따라 구제를 받으려면 법정으로 직행하기 전에 IDEA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행정 구제책(즉, 적법 절차 민원, 해결 회의,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 절차)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적법 절차 민원 및 심리가 계류 중인 동안 아동의 배치

#### 34 CFR § 300.518, K.S.A. 72-3416(d), K.A.R. 91-40-31

**장애 아동을 징계할 때의 절차** 표제에 명시된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 일단 적법 절차 민원이 상대방에게 전송되면 해결 절차 기간 중에 그리고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 또는 법원 절차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귀하와 주 또는 교육구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아동은 현재의 교육 배치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적법 절차 민원에 공립 학교 초기 입학 신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아동은 그러한 모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귀하의 동의 하에 정규 공립 학교 프로그램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적법 절차 민원이 IDEA의 파트 C에서 파트 B로 전환 중이고 만 3세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파트 C의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게 된 장애 아동이 IDEA의 파트 B에 따른 1차 서비스 신청과 관련된 경우, 교육구는 아동이 받고 있던 파트 C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동이 IDEA의 파트 B에 따라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고 아동이 처음으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는 데 동의하는 경우, 교육구는 (귀하와 교육구 모두 동의한) 논쟁의 여지가 없는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행정 항소 절차에서 주정부 검토 직원이 배치 변경이 적절하다는 귀하의 의견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배치는 아동이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 또는 법원 절차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유지할 아동의 현재 교육 배치로 간주해야 합니다.

## 변호사 수입료

### 34 CFR § 300.517, K.S.A. 72-3418(e)(4)

#### 일반

IDEA의 파트 B에 따라 제기된 모든 소송 또는 절차에서 법원은 귀하가 이기는(승소하는) 경우 재량에 따라 귀하에게 지급될 비용의 일부로 합당한 변호사 수입료를 재정할 수 있습니다.

IDEA의 파트 B에 따라 제기된 모든 소송 또는 절차에서 법원은 재량에 따라 변호사가 (a) 법원에서 경솔하거나 불합리하거나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는 민원 또는 법정 소송을 제기한 경우 (b) 소송이 명백히 경솔하거나 불합리하거나 근거가 없다고 판단된 후에도 계속 소송을 제기한 경우, 변호사가 승소한 주 교육청 또는 교육구에 지불해야 할 비용의 일부로 합당한 변호사 수입료를 재정할 수 있습니다.

IDEA의 파트 B에 따라 제기된 모든 소송 또는 절차에서 적법 절차 심리 또는 후속 법정 소송에 대한 귀하의 요청이 괴롭힘, 불필요한 지연 유발, 불필요한 소송 비용 증가 등 부적절한 목적으로 제기된 경우, 법원은 재량에 따라 귀하 또는 귀하의 변호사가 주 교육청 또는 교육구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로 합당한 변호사 수입료를 재정할 수 있습니다.

#### 수입료 재정

법원은 합당한 변호사 수입료를 다음과 같이 재정합니다.

1. 수입료는 제공 서비스의 유형 및 품질에 대해 소송이나 절차가 발생한 지역에서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요율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재정되는 수입료를 계산할 때 보너스 또는 승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서면 합의 제안이 제공된 후 수행된 서비스에 대해 IDEA의 파트 B에 따른 소송 또는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이 상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a. 연방 민사 소송 규칙의 규칙 68에 명시된 시간 내에 합의 제안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적법 절차 민원 또는 주 차원의 검토의 경우 소송 절차가 시작되기 10일 이상 전에 언제든지 이루어진 경우
  - b. 10일 이내에 제약이 수락되지 않은 경우
  - c. 귀하가 최종적으로 얻은 구제 조치가 합의 제안보다 귀하에게 더 유리하지 않다고 법원이나 행정 심리 담당관에서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승소하고 귀하가 합의 제안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변호사 수입료 및 관련 비용이 귀하에게 재정될 수 있습니다.
3. 회의가 행정 절차 또는 법원 소송의 결과로 열리지 않는 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팀 회의와 관련하여 수입료가 재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중재 표제에 설명된 대로 중재에 대한 수입료도 재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결 절차** 표제에 설명된 대로 해결 회의는 행정 청문회 또는 법원 소송의 결과로 소집된 회의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러한 변호사 수입료 조항의 목적상 행정 심리 또는 법원 소송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IDEA 파트 B에 따라 재정되는 변호사 수임료를 적절하게 삭감합니다.

1. 귀하 또는 귀하의 변호사가 소송 또는 소송 절차 중 분쟁의 최종 해결을 부당하게 지연시킨 경우
2. 달리 재정되도록 승인된 변호사 수임료가 합리적으로 유사한 능력, 평판 및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제공하는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 통용되는 시간당 요율보다 지나치게 높은 경우
3. 소송 또는 절차의 성격을 고려할 때 소요된 시간과 제공된 법률 서비스가 과도한 경우
4. 귀하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적법 절차 민원** 표제에 설명된 적법 절차 요청 통지에 있는 적절한 정보를 교육구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그러나 주 또는 교육구가 소송 또는 절차의 최종 해결을 부당하게 지연시키거나 IDEA 파트 B의 절차적 보호 조치 조항에 따라 위반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 법원은 수수료를 삭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장애 아동을 징계할 때의 절차

참고: 이 섹션은 영재 아동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교직원의 권한

34 CFR § 300.530,

### 사례별 판단

교직원은 징계와 관련된 다음 요건에 따라, 배치의 변경이 교칙을 위반한 장애 아동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례별로 고유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일반

교직원은 장애 아동의 교칙 위반 시 비장애 아동에 대해 취하는 것과 동일한 범위까지 적절한 임시 대안 교육 환경, 다른 환경으로의 배치 또는 수업일 기준 연속 **10일** 이내의 정학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교직원은 또한 별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한 학년도에 수업일 기준 연속 **10일** 이하의 추가 정학 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정학 조치가 배치 변경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징계 처분으로 인한 배치 변경** 표제 참조).

장애 아동이 한 학년도에 수업일 기준 총 **10일** 동안 현재 배치에서 제외된 후, 교육구는 해당 학년도의 후속 제외 일수 중에 **서비스** 부제에 따라 필요한 범위까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추가 권한

학생의 교칙 위반 행위가 아동의 장애 징후가 아니고(**징후 판단** 부제 참조) 배치의 징계 처분 변경이 수업일 기준 연속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교직원은 비장애 아동과 동일한 방식으로, 비장애 아동과 동일한 기간 동안 장애 아동에게 징계 절차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학교는 아래 **서비스**에 설명된 대로 해당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동의 IEP 팀은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임시 대안 교육 환경을 결정합니다.

### 서비스

교육구는 한 학년도에 수업일 기준 **10일 이하**로 현재 배치에서 제외된 장애 아동 또는 비장애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수업일 기준 **10일 이상** 아동의 현재 배치에서 제외되고 그 행동이 아동의 장애 징후가 아니거나(**징후 판단** 부제 참조) 특수 상황에 따라 제외된 경우(**특수 상황** 부제 참조), 해당 장애 아동은

1. 다른 환경(임시 대안 교육 환경)에서도 아동이 일반 교육 과정에 계속 참여하고 아동의 IEP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 서비스(이용 가능한 적절한 무상 공교육)를 계속 받아야 합니다.
2. 행동 위반을 해결하고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된 기능적 행동 평가, 행동 개입 서비스, 수정된 교육을 적절하게 받아야 합니다.

장애 아동이 한 학년도에 수업일 기준 **10일** 동안 현재 배치에서 **제외된 후** 현재의 제외 기간이 수업일 기준 연속 **10일 이하**이며 제외가 배치의 변경이 아닌 경우(아래 정의 참조), 정규 교육 관리자를 포함한 학교 관계자, 특수 교육 책임자 또는 책임자의 피지명인 그리고 아동의 특수 교육 교사(K.A.R. 91-40-33(b))는 아동이 다른 환경에서도 일반 교육 과정에 계속 참여하고 아동의 IEP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서비스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제외가 배치의 변경인 경우(**징계 처분으로 인한 배치 변경** 참조), 아동의 IEP 팀은 아동이 다른 환경(임시 대안 교육 환경)에서도 일반 교육 과정에 계속 참여하고 아동의 IEP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육을 받게 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서비스를 결정합니다.

## 징후 판단

교칙 위반으로 인해 장애 아동의 배치를 변경하기로 결정한 후 수업일 기준 **10일** 이내에(수업일 기준으로 연속 **10일** 이내이고 배치 변경이 아닌 제외 제외), 교육구, 귀하 및 IEP 팀의 기타 관련 구성원(귀하와 교육구가 결정)은 아동의 IEP, 교사 관찰 내용 및 학교에서 제공한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학생 파일에 있는 모든 관련 정보를 검토하여 문제의 행동이 다음과 같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1. 문제의 행동이 아동의 장애로 인해 발생했거나 아동의 장애와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지
2. 문제의 행동이 교육구가 아동의 IEP를 이행하지 못한 직접적인 결과인지

교육구, 귀하 및 아동의 IEP 팀 내 다른 관련 구성원이 이러한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행동은 아동의 장애 징후로 판단해야 합니다.

교육구, 귀하 및 아동의 IEP 팀의 기타 관련 구성원이 문제의 행동이 교육구가 IEP를 이행하지 못한 직접적인 결과라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구는 이러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행동이 아동의 장애 징후라는 판단

교육구, 귀하 및 IEP 팀 내 다른 관련 구성원이 해당 행동이 아동의 장애 징후라고 판단하는 경우 IEP 팀은 다음 조치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합니다.

1. 교육구가 배치 변경을 초래한 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기능적 행동 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기능적 행동 평가를 수행하고 아동에 대한 행동 개입 계획을 이행합니다.
2. 행동 개입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경우 행동 개입 계획을 검토하고 그러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계획을 수정합니다.

아래 **특수 상황** 부제에 설명된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와 교육구가 행동 개입 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배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육구는 아동이 제외되었던 기존 배치로 아동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 특수 상황

교직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 행동이 아동의 장애 징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업일 기준 최대 45일 동안 임시 대안 교육 환경(아동의 IEP 팀에서 결정)으로 아동을 옮길 수 있습니다.

1. 아동이 학교에 무기(아래 정의 참조)를 가져오거나 학교, 학교 구내 또는 주 교육청 또는 교육구 관할의 학교 행사에서 무기를 소지하는 경우
2. 아동이 학교, 학교 구내 또는 주 교육청 또는 교육구 관할의 학교 행사에서 고의로 불법 약물(아래 정의 참조)을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규제 약물을 판매 또는 판매를 권유하는 경우(아래 정의 참조)
3. 아동이 학교, 학교 구내 또는 주 교육청 또는 교육구 관할의 학교 행사에서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아래 정의 참조)를 입힌 경우

## 정의

**규제 약물**이란 규제약물법(21 U.S.C. 812(c)) 섹션 202(c)의 부칙 I, II, III, IV 또는 V에 따라 확인된 약물 또는 기타 물질을 의미합니다.

**불법 약물**이란 규제 약물을 의미하지만 면허를 소지한 의료 전문가의 감독 하에 합법적으로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 하에서 해당 법률 또는 기타 연방법 조항에 따라 합법적으로 소유 또는 사용하는 규제 약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심각한 신체적 상해는 미국 법전 18편 1365(h)(3)항에 명시된 "심각한 신체적 상해"라는 용어에 주어진 의미를 갖습니다.

무기는 미국 법전 18편 930(g)(2)항에 명시된 "위험한 무기"라는 용어에 주어진 의미를 갖습니다.

## 통지

교칙 위반으로 인해 아동의 배치에 해당하는 제외를 하기로 결정한 날에 교육구는 그 결정을 부모에게 통지하고 절차적 보호 조치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 징계 처분으로 인한 배치 변경

### 34 CFR § 300.536

다음과 같은 경우 아동의 현재 교육 배치에서 장애 아동을 제외하는 것은 **배치 변경**입니다.

1. 아동이 수업일 기준으로 연속 10일 이상 제외된 경우
2. 아동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패턴을 구성하는 일련의 정학 대상인 경우
  - a. 한 학년도에 정학 일수가 수업일 기준 10일을 초과함
  - b. 아동의 행동이 이전 사건에서 일련의 정학 조치를 초래한 아동의 행동과 실질적으로 유사함, 그리고
  - c. 각 정학 기간, 아동의 총 정학 시간, 정학 조치 간의 근접성 같은 추가 요인

정학 패턴이 배치 변경을 구성하는지 여부는 해당 교육구에서 사례별로 결정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적법 절차 및 사법 절차를 통해 검토를 받습니다.

## 환경의 결정

### 34 CFR § 300.531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팀은 **배치 변경**에 해당하는 제외와 **추가 권한** 및 **특수 상황** 부제에 따른 제외에 대한 임시 대안 교육 환경을 결정합니다.

## 항소

### 34 CFR § 300.532

## 일반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법 절차 심리를 요청하기 위해 적법 절차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적법 절차 민원 절차** 표제 참조).

1. 이러한 징계 조항에 따른 배치에 관한 모든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2. 위에서 설명한 징후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육구는 아동의 현재 배치를 유지하는 것이 아동이나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법 절차 심리를 요청하기 위해 적법 절차 민원(위 참조)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심리 담당관의 권한

**공정한 심리 담당관** 부제에 설명된 요건을 충족하는 심리 담당관은 적법 절차 심리를 실시하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심리 담당관은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심리 담당관이 **교직원의 권한** 표제에 설명된 요건을 위반하여 아동이 제외되었다고 판단하거나 아동의 행동이 장애 징후라고 판단하는 경우 장애 아동을 이전에 제외되었던 기존 배치로 돌려보냅니다.

2. 심리 담당관이 아동의 현재 배정을 유지하는 것이 아동이나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장애 아동을 수업일 기준 최대 45일 동안 적절한 임시 대안 교육 환경으로 배치 변경을 명령합니다.

교육구가 아동을 기존 배치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동이나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심리 절차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귀하 또는 교육구가 그러한 심리를 요청하기 위해 적법 절차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적법 절차 민원, 적법 절차 민원에 대한 심리, 및 결정에 대한 항소, 공정한 검토** 표제에 설명된 요건을 충족하는 심리를 열어야 합니다. 다음의 예외의 경우입니다.

1. 주 교육청 또는 교육구가 신속 적법 절차 심리를 주선해야 하며 심리 요청일로부터 수업일 기준 **20**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심리 후 수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2. 귀하와 교육구가 서면으로 회의를 포기하거나 중재를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해결 회의는 적법 절차 민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적법 절차 민원 접수 후 **15**일 이내에 양 당사자가 만족할 정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심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주에서는 신속 적법 절차 심리에 대해 수립한 절차 규칙이 여타 적법 절차 심리의 절차 규칙과 다를 수 있지만 일정을 제외하고 이러한 규칙은 적법 절차 심리에 관한 이 문서의 규칙과 일치해야 합니다.

귀하 또는 교육구는 다른 적법 절차 심리의 결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 적법 절차 심리의 결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항소** 표제 참조).

### 항소 중 배치

#### 34 CFR § 300.533

위에 설명된 대로 귀하 또는 교육구가 징계 문제와 관련하여 적법 절차 민원을 제기할 때, (귀하와 주 교육청 또는 교육구가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아동은 심리 담당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또는 **교직원의 권한** 표제에 규정공되고 설명된 제외 기간 만료 시까지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까지 임시 대안 교육 환경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아직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적격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보호

#### 34 CFR § 300.534

##### 일반

아동이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 있다고 판단되지 않았고 교칙을 위반했지만 징계 조치를 초래한 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교육구가 아동이 장애 아동이라는 사실을 (아래 판단과 같이) 인지한 경우 아동은 이 통지에 설명된 보호 조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징계 문제에 대한 인지의 근거

교육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징계 조치를 초래한 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아동이 장애 아동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귀하가 아동에게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우려를 해당 교육 기관의 감독자 또는 행정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또는 아동의 교사에게 서면으로 표명한 경우
2. 귀하가 IDEA의 파트 B에 따라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적격성 관련된 평가를 요청한 경우
3. 아동의 교사 또는 기타 교육구 직원이 교육구의 특수교육 담당 이사 또는 교육구의 다른 감독자에게 직접 아동이 보이는 행동 패턴에 대해 구체적인 우려를 표명한 경우

##### 예외상황

다음과 같은 경우 교육구는 그에 대한 인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 귀하가 아동에 대한 평가를 허용하지 않았거나 특수교육 서비스를 거부한 경우
2. 아동을 평가한 결과 IDEA 파트 B에 따라 장애 아동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 인지의 근거가 없는 경우 적용되는 조건

교육구에서 아동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하기 전에 아동이 장애 아동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징계 문제에 대한 인지의 근거 및 예외 상황** 부제에 설명된 바와 같이, 해당 아동은 유사한 행동을 하는 비장애 아동에게 적용되는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 처분을 받은 기간에 아동에 대한 평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속히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아동은 교육 서비스 없이 정학 또는 퇴학을 포함하여 학교 당국이 결정한 교육 배치에 남아 있습니다.

아동이 장애 아동인 것으로 판단되면 교육구에서 수행한 평가 정보와 귀하가 제공한 정보를 고려하여 교육구는 위에 설명된 징계 요건을 포함하여 IDEA의 파트 B에 따라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법 집행 기관 및 사법 당국에 의한 의뢰 및 조치

#### 34 CFR § 300.535

IDEA의 파트 B는

1. 기관이 관련한 당국에 장애 아동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신고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2. 주 법 집행 기관과 사법 당국이 장애 아동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연방법 및 주법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책임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 기록 전송

교육구가 장애 아동이 저지른 범죄를 신고하는 경우 교육구는

1. 해당 기관에서 범죄를 신고하는 당국에서 아동의 특수교육 및 징계 기록 사본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전송해야 합니다.
2. 가족 교육권 및 프라이버시법(FERPA)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아동의 특수교육 및 징계 기록 사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공공 비용으로 아동을 사립 학교에 일방적으로 배치하는 것에 대한 요건

### 사립 학교에 자발적으로 등록된 아동에 대한 연방정부 요건

#### 34 CFR § 300.131 ~ 34 CFR § 144

IDEA의 파트 B는 교육구가 아동에게 적절한 무상 공교육(FAPE)을 제공하는데도 귀하가 아동을 사립 학교나 시설에 배치하기로 선택한 경우 사립 학교 또는 시설에서 제공되는 장애 아동에 대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등의 교육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립 학교가 위치한 교육구는 34 CFR § 300.131 ~ 300.144에 의거하여 부모가 사립 학교에 배치한 아동 관련하여 파트 B 조항에 따라 요구가 해결된 모집단에 해당 아동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 \*사립 학교에 자발적으로 등록된 아동에 대한 주정부 요건C

#### K.S.A. 72-3462 및 K.A.R. 91-40-43, 91-40-45, 91-40-46 및 91-40-47

사립 학교에 다니는 예외 아동은 요청 시 학생과 부모가 거주하는 교육구에서 IEP를 통해 적절한 무상 공교육(FAPE)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교육구는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 및 사립 학교 관계자와 협의하여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장소를 정합니다.

- 공립 학교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공립 학교는 아동의 사립 학교 또는 자택에서 아동이 서비스를 받는 장소까지, 그리고 아동이 서비스를 받는 장소에서 아동의 사립 학교 또는 자택까지 교통편을 제공해야 합니다.
- 서비스가 사립 학교에서 제공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 비용은 공립 학교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구의 평균 비용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구는 그 경계 밖에서 교통편을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IEP에 따라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립 학교 아동의 부모는 특수교육 중재를 요청하거나 특수교육 적법 절차 심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 FAPE가 문제가 되는 경우

#### 34 CFR § 300.148, K.A.R. 91-40-41

#### 사립 학교 배치에 대한 상환

예외 아동이 이전에 교육구의 권한에 따라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았고 부모가 교육구의 동의 또는 의뢰 없이 아동을 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 등록하기로 선택한 경우, 법원이나 심리 담당관은 해당 기관이 해당 등록 이전에 적시에 적절한 무상 공교육(FAPE)을 아동에게 제공하지 않았으며 사립 학교 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관이 해당 등록 비용을 귀하에게 상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리 담당관이나 법원은 해당 배치가 주 교육청 및 교육구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적용되는 해당 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귀하의 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상환 제한

위 단락에 설명된 상환 비용은 다음과 같은 경우 삭감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1. (a) 공립 학교에서 아동을 퇴학시키기 전에 귀하가 참석한 가장 최근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회의에서 귀하가 자신들의 우려 사항과 아동을 공공 비용으로 사립 학교에 등록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언급하는 것을 포함하여 해당 교육구에서 아동에게 FAPE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한 배치를 거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IEP 팀에 알리지 않은 경우, 또는 (b) 공립 학교에서 아동을 퇴학시키기 최소 10영업일

- 영업일에 발생하는 공휴일 포함) 전까지  
 귀하가 해당 정보에 대해 교육구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 귀하가 아동을 공립 학교에서 자퇴시키기 전에 교육구가 사전 서면 통지(적절하고 합리적인 평가 목적에 대한 설명 포함)를 통해 아동을 평가하고자 하는 의도를 귀하에게 알렸으나 아동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귀하가 허용하지 않은 경우
  3. 귀하의 행동과 관련하여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단, 상환 비용은

1. 다음과 같은 경우 귀하가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삭감 또는 거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a) 학교에서 귀하가 통지를 하지 못하게 방해한 경우 (b) 귀하가 위에 설명된 통지를 할 책임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c) 위의 요건 준수 시 아동에게 신체적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2. 다음과 같은 경우 법원 또는 심리 담당관의 재량에 따라 귀하가 필요한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삭감 또는 거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 귀하가 글을 읽지 못하거나 영문으로 글을 쓸 수 없는 경우 (b) 위의 요건 준수 시 아동이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